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6-심사-35

제 목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망 A의 수계인 B

㉠도 ㉡시 ㉢면 ㉣리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C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은 1963. 3. 13. 주식 회사 △ ▲광업소에 입사하여 20여년 동안 분진업무에 종사하다가 1983. 3. 30. 퇴직한 이후 1997. 5. 20. 진폐증을 진단받고 ◎병원 등에서 요양을 받던 중 2014. 4. 4.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7. 5. 20. 망인의 진폐증 진단에 따른 요양개시에 적용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6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당해 근로자와 직종 등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이하 “특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53,456.13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3. 11. 5. 1976년 업무상 사고에 따른 일반산재 평균임금 2,932.35원이 확인되는데도 평균임금 산정업무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동종임금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1976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시 적용하였던 평균임금은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국한된 경우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임금구조 통계에 따라 동종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오히려 노동통계에 따른 특례임금이 더욱 현실성이 있다는 사유로 2013. 12. 20.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976. 3. 20.부터 1976. 4. 16.까지 망인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당시 보험급여원부상 평균임금이 2,932.65원으로 확인되고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이하 “평균임금산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실제 임금자료가 없더라도 망인의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이하 “임금추정자료”라 한다)가 있는 경우 망인이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청구인과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이하 “동종·유사 근로자 임금”이라 한다)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재직 중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 중 적용된 평균임금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임금추정자료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은 1963. 3. 13.부터 1983. 3. 30.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20년여 동안 근무하였고 망인의 직업병 진단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기간¹⁾인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실제 임금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2) 망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무하던 기간 중인 1976. 3. 20. 채광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우족오지 제1지족 지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1976. 3. 20.부터 1976. 4. 16.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며 위 업무상 사고에 대해 처분청은 요양기간 시작일 이전 3개월 동안인 1975. 12. 20.부터 1976. 3. 19.까지 평균임금을 2,932.65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3) 위 “2)항”의 내용과 같이 망인이 1976년에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시 적용받았던 평균임금은 1975. 12. 20.부터 1976. 3. 19.까지의 임금자료로 산정한 것이고, 망인의 직업병 진단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대상 기간인 1982. 12. 30.~

1) 평균임금산정지침에 따르면 퇴직일 이후 직업병을 진단받은 경우 직업병 진단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퇴직일 이후부터 직업병 진단일까지의 기간은 제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퇴직일인 1983. 3. 30. 이전 3개월이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이 됨

1983. 3. 29.로부터 7년여 전의 임금 자료이다.

4) 망인은 1997. 5. 20.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직업병 진단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산정지침에 규정된 평균임금 결정 방식(직업병 진단일이 1983. 7. 1.부터 2000. 6. 30.까지인 경우)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평균임금산정지침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구 분	내 용	
기본원칙	1단계로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2단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임금을 산정한 후 1단계와 2단계의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평균임금 산정방법	실제 임금자료가 있는 경우	- 평균임금: ① 근로자의 실제 임금자료 외에도 ② 폐광대책비 지급 시 평균임금 자료 ③ 재직 중 업무상 재해에 적용된 평균임금 자료를 폭넓게 실제 임금자료로 인정 -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휴·폐업일 또는 퇴직 이후 직업병 진단 시 휴·폐업일 또는 퇴직일 기준 - 평균임금 증감: 휴·폐업일 또는 퇴직 이후 직업병 진단 시에는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적용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진단일 이후 보험급여 지급
	실제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	- 평균임금: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 제2호, 제4호의 임금추정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고시 제5조 제3호, 제5호를 근거로 동종·유사근로자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결정 -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및 평균임금 증감: 실제 임금자료가 있는 경우와 동일
특례임금 산정방법	직업병 진단일 당시의 적용 법령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짐 '83. 7. 1. ~ '00. 6. 30. 직업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경우: 직업병 진단일 기준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한 분기당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산정	
비교원칙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임금을 각각 산정한 후, 양자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추정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자료: 근로복지공단 평균임금산정지침

5) 처분청은 위 “4)”항의 평균임금산정지침에 따라 망인의 경우 실제 임금자료가 없고 임금추정자료도 없는 경우로 보아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 등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특례규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및 평균임금산정지침 등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퇴직일 이후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을 적용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되, 실제 임금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임금추정자료가 있는 경우 동종·유사 근로자 임금과 특례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임금추정자료도 없는 경우에는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임금추정자료라 함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인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실제 임금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평균임금산정지침에서는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자료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 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

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등을 의미하는바,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이 아닌 과거의 자료는 퇴직일 당시의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하여야 하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정사실 “2)~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임금추정자료로 제시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시 적용받았던 평균임금은 직업병 진단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 대상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자료가 아니라 직업병 진단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시점(퇴직일)인 1983. 3. 30.로부터 7년여 전의 과거 자료이므로 청구인의 직업병 진단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될 수 있는 임금추정자료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 02 . 02 .

[별지]

관계 법령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⑤ 생략

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생략

② 법 제3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 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의 업종·규모 및 성별·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월급여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이하 생략)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 지침」(근로복지공단 제2013-12호, 2013. 4. 3. 개정)

Ⅲ. 직업병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법

□ 실제임금 자료가 있는 경우

- (임금자료 확인·조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소속한 또는 소속하였던 사업장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자료를 확인·조사
 - － 실임금 자료, 폐광대책비 지급시 산정한 평균임금 자료, 재직 중 업무상 재해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 자료 등 참고
-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할 것
- (제외기간 처리) 진단일 당시 소속 사업장이 휴·폐업 되었거나 당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휴·폐업 또는 퇴직일로부터 직업병 진단일까지를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으로 함
- (평균임금 증감) 휴·폐업 또는 퇴직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위 금액을 진단일까지 증감

□ 실제임금자료가 없는 경우

○ (적정임금 산정) 근로자의 개인자료가 유사 사업장의 동일직종 근로자에 관한 사항, 노동통계 등과 비교하여 적정금액 산정

－ 실제 임금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의 소득증명, 지급받은 금품의 기록 등(고용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 제2호와 제4호 자료) 개인자료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신고된 금액 등 참고

－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

○ (제외기간 처리 및 평균임금 증감) 실제 임금자료가 있는 경우와 동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결정 사례>

■ 사실관계

본진경력	'86. 7. 1. ~ '90. 2. 28.	－
최초 직업병 진단일	2001. 4. 20.	－
현 최초 평균임금	660,60.22	특례 평균임금

■ 퇴직일 기준/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구 분		금 액	비 고
제2호	소득금액 증명원	8,468.95 499,668	근로자의 퇴직연도 '90년 과세금액 499,668을 재직일수 59일로 나눈 금액
	국민연금 납부내역	없음	
제3호	동종근로자 (유사근로자)	① 26,641.58 ② 21,641.58 ③ 18,641.58 ④ 16,641.58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이 2 이상인 경우
제4호	사업장 재직 기간 중 임금	없음	－
제5호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	20,641.58	－
	매통보고서	18,841.46	－

⇒ 제3호 임금 중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임금과 가장 유사한 ② 21,641.58원을 적정임금
으로 산정, 이를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2.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 산정방법

◇ 직업병 진단일 당시의 적용법령에 따라 특례임금 산정

*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당해근로자의 직업병 진단일을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적용법령에 따라 산정할 것

□ '83. 7. 1. ~ '00. 6. 30.에 직업병을 진단받은 근로자

○ 직업병 진단일 기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분기당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산정

3.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비교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각각 산정한 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

□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적용

□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2015.10.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

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